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서왕진·이해민·강경숙

황운하 · 신장식 · 조인철

김준형 · 차규근 · 박은정

김재원 · 김선민 · 조 국

김상욱 • 정춘생 • 송재봉

임호선 · 이성유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보건복지부의 『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』에 따르면, 20대·30 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.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	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
•교육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	•교육) ①
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・단체	
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	
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	
로 정기적인 상담・교육을 실	
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
	단체 및 청년시설
<u>2.·3.</u> (생 략)	<u>3.•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	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